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좀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시민축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을 “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 이라 한다)”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를 “일부 또는 전부”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를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하며, 감면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민축구단에게” 를 “시민축구단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습경기장으로” 를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시 소유”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인천유나이티드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이란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3.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략)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일부 또는 전부-----.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 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

----- .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하며, 감면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
- 시민축구단에 -----

② -----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시
소유 -----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0조(사용료) -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 제12조(초과 사용료)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채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이 하며,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이 정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한다.
2. 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100로 한다.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사용자가 조기·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의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인천유나이티드를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3.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

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7-19>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정리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임.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